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 4. 30.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4월 9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 실태조사·지원사업·업무의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 민간전문가 활용·협력체계 구축·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 본 조례안은

-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 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이고 11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의 나이를 “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지원대상과 맞추어 서울시 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3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등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전문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1주일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며, 이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족돌봄으로 인해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37%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청년은 ▲생계 ▲의료 ▲휴식지원 ▲문화여가 순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처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부각됨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 11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앞서 살펴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민간전문가 활용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4
----------	-----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 다. 실태조사·지원사업·업무의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 라. 민간전문가 활용·협력체계 구축·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제11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 「청소년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4. 9. ~ 4. 13.)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